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작성요령) 삭제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긴급구조자원조사서

① 일반현황(공통)

기관명 (단체명)			주 소																		
총 근무인원																					
대표자 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업무 담당부서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업무 종사자 인원																		
지원활동 가능재난유형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지원활동 가능재난유형’ 을 구체적으로 작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감염병 등																				
재난현장에서의 주요기능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주요기능’ 을 세부적으로 작성 <table><tr><td>인명구조</td><td>산악, 붕괴, 수난, 화생방 등</td><td>현장통제</td><td>교통, 현장출입, 대피 등</td></tr><tr><td>화재진압</td><td>일반화재, 산불, 항공기화재 등</td><td>응급의료</td><td>중증도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td></tr><tr><td>긴급구조</td><td>심리, 급식, 세탁, 회복 지원 등</td><td>오염통제</td><td>방역, 탐지, 방제, 차단, 폐기 등</td></tr><tr><td>긴급복구</td><td>전기, 가스, 도로, 통신, 시설 등</td><td>기 타</td><td>대피소 지원, 원인조사, 정보제공, 용수공급 등</td></tr></table>					인명구조	산악, 붕괴, 수난, 화생방 등	현장통제	교통, 현장출입, 대피 등	화재진압	일반화재, 산불, 항공기화재 등	응급의료	중증도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긴급구조	심리, 급식, 세탁, 회복 지원 등	오염통제	방역, 탐지, 방제, 차단, 폐기 등	긴급복구	전기, 가스, 도로, 통신, 시설 등	기 타	대피소 지원, 원인조사, 정보제공, 용수공급 등
인명구조	산악, 붕괴, 수난, 화생방 등	현장통제	교통, 현장출입, 대피 등																		
화재진압	일반화재, 산불, 항공기화재 등	응급의료	중증도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긴급구조	심리, 급식, 세탁, 회복 지원 등	오염통제	방역, 탐지, 방제, 차단, 폐기 등																		
긴급복구	전기, 가스, 도로, 통신, 시설 등	기 타	대피소 지원, 원인조사, 정보제공, 용수공급 등																		
긴급대응 협력관	지정일		긴급구조통제단 파견 연락관	지정일																	
	근무부서			근무부서																	
	직책			직책																	
	성명			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 파견 연락관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재난 발생 시 연락관의 연락처 등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근무 부서, 직책, 성명, 일반/휴대전화 기재																	
상황실 (당직실)	부서명		근무형태																		
	부서 전화번호		FAX																		
	※ 상황실(당직실) 부재로 야간·휴일 재택근무 운영 시, 근무형태란에 ‘재택비상대기’ 작성하고 재택근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명 및 부서 전화번호 작성																				

2 운영체계(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현장지휘체계	재난대응계획 또는 재난대응 매뉴얼	
		※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수립한 재난대응계획 또는 재난대응매뉴얼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재난현장 대응 운영체계 및 조직도	
		※ 재난현장 대응 운영체계 및 조직도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비상연락망	
		※ 재난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구성도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재난현장 자원관리체계	인적자원 관리체계	
		※ 재난 발생 대비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물적자원 관리체계	
		※ 재난 발생 대비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③ 재난 대비·대응 우수 사례(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대비훈련 우수사례	
	※ 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혹은 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 지역본부, 지사 등이 실시한 훈련 중 우수 훈련사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재난대응활동 우수사례	
	※ 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혹은 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 지역본부, 지사 등이 참여한 긴급구조대응활동 중 우수사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타 우수사례 (업무협약 등)	
	※ 긴급구조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기타 재난대비·대응 우수사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인적자원(공통)

재난안전법 제55조 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교육과정	총 교육대상자(명)	교육이수자(명)	총 교육대상자 대비 교육이수자 비율(%)
	관리자 과정 (7시간)			※ 계산식 : 관리자과정 교육이수자 ÷ 총 교육대상자 ×100
	실무자 과정 (14시간)			※ 계산식 : 실무자과정 교육이수자 ÷ 총 교육대상자 ×100
	총 계 (명, %)			※ 계산식 : (관리자과정 교육이수자 + 실무자과정 교육이수자) ÷ 총 교육대상자 ×100
	※ 아래 교육대상자와 계산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교육이수 수료증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육대상자: 긴급구조지원기관(행정기관 제외)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① 관리자: 긴급대응협력관, 재난관리 총괄부서, 매뉴얼 담당부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작성 부서의 장 ② 실무자: 긴급구조통제단 파견연락관, 재난관리 총괄부서, 매뉴얼 담당부서, 긴급구조 자원조사서 작성 부서 전직원(공통업무, 현업담당자 등 재난관리 업무와 무관한 직원 제외)			
재난안전법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 이수자	교육과정	총 교육대상자(명)	교육이수자(명)	총 교육대상자 대비 교육이수자 비율(%)
	관리자 과정 (7시간)			※ 계산식 : 관리자과정 교육이수자 ÷ 총 교육대상자 ×100
	실무자 과정 (14시간)			※ 계산식 : 실무자과정 교육이수자 ÷ 총 교육대상자 ×100
	총 계 (명, %)			※ 계산식 : (관리자과정 교육이수자 + 실무자과정 교육이수자) ÷ 총 교육대상자 ×100
	※ 아래 교육대상자와 계산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교육이수 수료증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육대상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① 관리자: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 및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의 장, 안전책임관 등 ② 실무자: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 매뉴얼 담당부서 팀 전직원(공통업무, 현업담당자 등 재난안전 업무와 무관한 직원 제외), 13개 협업기능 주관부서 재난업무담당자 등			

4 인적자원(공통)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경력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근무인원 근무기간 현황		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총 계
	※ 근무경력에 따른 근무인원을 작성하고 근무기간 증빙자료 제출		인원 (명)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총 근무인원 대비 업무경력 1년 이상 종사자 비율(%)						
			※ 계산식 : 업무경력 1년 이상 종사자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총 근무인원 ×100				
긴급구조 관련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	자격증 명칭	보유인원(명)		자격증 명칭	보유인원(명)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총 근무인원 대비 긴급구조 관련 자격보유자 비율(%)		※ 계산식 : 긴급구조 관련 자격보유자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총 근무인원 ×100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긴급구조 관련 자격보유 현황을 작성하고 증빙자료(자격증사본) 제출						
	의 료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 기	전기기능사/산업기사/기사/응용기술사, 전기공사산업기사/기사,					
	안전 관리	산업안전산업기사/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가스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사/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화 학	화공기사/기술사,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정보통신	무선설비기능사/산업기사/기사, 통신선로기능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기사/기술사					
에너지	에너지관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방사선관리기술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력기사,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특수)						
인명구조	인명구조(요)원, 심폐소생술전문자격, 수상안전강사, 수상인명구조강사(요원), 생존수영강사, 스쿠버다이버, 산악전문지도사, 산악안전강사, 잠수기능사/산업 기사/기능장						
건설·토목	배관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토목산업기사/기사/시공기술사/구조기술사						
기 계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비 파괴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산업기사/기사 비파괴검사기술사						
광업자원	광해방지기사/기술사, 광산보안기능사/산업기사/기사						
심 리	심리사회적지지도육강사						
기 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지도조종자/조종자, 1·2·3·4·5·6급 항해사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5 물적자원(시·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상황 시설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시설명			
		※ 재난상황시설로서 종합관제실, 당직실, 상황실 중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하고 재난상황시설 부재로 야간·휴일 재택근무 운영 시, ‘재택비상대기’ 작성			
정보 통신 장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 생하였을 때 긴급구조 기관과 연락할 수 있 는 정보통신 장비	장비명	보유수량	적정 보유(확보) 기준	적정 보유(확보) 기준 대비 보유수량(%)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장비의 보유수량, 적정 보유기준, 적정 보유기준 대비 보유수량(계산식 : 보유수량 ÷ 적정 보유(확보) 기준 ×100) 작성			
정보통신 지령장치, 위성전화, 재난안전통신망, 각종 무전기 등					
물자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대기 등을 위한 물자	물자명	보유수량	적정 보유(확보) 기준	적정 보유(확보) 기준 대비 보유수량(%)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보유하고 있는 휴식·대기 물자의 보유수량, 적정 보유기준, 적정 보유기준 대비 보유수량(계산식 : 보유수량 ÷ 적정 보유(확보) 기준 ×100) 작성			
	물 자 천막, 에어텐트, 담요, 모포, 회복차, 급식차, 세탁차 등				
	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물자명	보유수량	적정 보유(확보) 기준	적정 보유(확보) 기준 대비 보유수량(%)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지·보수·정비 물자의 보유수량, 적정 보유기준, 적정 보유기준 대비 보유수량(계산식 : 보유수량 ÷ 적정 보유(확보) 기준 ×100) 작성					
물 자 용접장비, 공구세트, 발전기, 절단기, 유조차 등					
재난 대응 시설 · 장비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전문인력과 재난대응 시설·장비를 재난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장비명	보유수량	적정 보유(확보) 기준	적정 보유(확보) 기준 대비 보유수량(%)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송장비의 보유수량, 적정 보유기준, 적정 보유기준 대비 보유수량(계산식 : 보유수량 ÷ 적정 보유(확보) 기준 ×100) 작성			
		수송장비 구급차, 재난의료지원차량, 긴급출동차량(버스, 트럭), 드론차 등			

5 물적자원(시·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대응 시설·장비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 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장비(시설)명	보유수량	적정 보유(확보) 기준	적정 보유(확보) 기준 대비 보유수량(%)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보유하고 있는 긴급구조활동 수행 시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수량, 적정 보유기준, 적정 보유기준 대비 보유수량(계산식 : 보유수량 ÷ 적정 보유(확보) 기준 ×100) 작성			
화재진압	공기호흡기, 방화복, 방열복, 소방펌프차,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송풍기 등		
인명구조	체인톱, 착암기, 만능도끼, 동력절단기, 유압콤비, 유압램, 유압 절단기, 유압 스프레더, 에어백세트, 라이트라인, 구조용 로프, 로프총, 등하강기, 도르래, 스위벨, 확보판, 레스큐튜브, 구명환, 구명 조끼, 공기안전매트 등		
응급의료	병상(응급실, 음압감염격리실 등), 들것, 휴대용간이인공호흡기, KED, 긴척추고정판, 혈압계, 자동심장충격기, 혈당측정기, 산소포화도측정기, 체온계, 휴대용흡인기, 사체낭, 간이침대, 담요, 모포, 펜라이트, 부목세트, 감염보호복, 화상키트, 음압텐트 등		
전 기	누전차단기,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 발전기, 비상발전차, 환선작업차(고압, 저압), 절연장갑 등		
유해화학물질	화학보호복(LEVEL A·B·C·D), 다중탐지키트, 휴대용 제독기, 오염제거기, 흡착포, 흡착팩, 유화제, 오일펜스, 방진복, 방독면, 방역차량, 폐기물 백 등		
	가스측정기, 표면오염측정기, 표면오염감시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연소가스 분석기, 다이어프램 압력계, 방식선위 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암모니아 검지기, 가스검지기, 가스누출 검지기, 염소농도측정기, 레이저 메탄 검지기, CO검지기, 매설배관탐지기, 화학작용제 탐지기, 대기시료 포집장비, 시료채취장비, 휴대용 이온 분광기, 검지관식 탐지장비, 황산 측정기, 풍량·풍속계, PH측정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기 압력 기록계, 가스 누설 검사차량 등		
방사능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개인선량계, 방사능 계측기, 공간선량 측정기, 방호복 등		
환 경	화학보호복(LEVEL A·B·C·D), 수질측정기, 잔류염소계, 용존 산소 측정기, PH측정기, 휴대용 산소측정기, 복합가스농도 측정기 등		
	양수기, 수중펌프, 엔진펌프, 급수차량, 고무보트, 가슴장화, 우의, 마대, 말뚝, 묶음줄, 비닐류, 오탁방지막 등		
긴급구호	긴급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일시구호세트, 구호의류, 회복차, 세탁차, 샤워차, 재난심리회복지원차, 긴급재난대응차, 이재민쉼터, 이동형 비상발전기, 천막, 담요 등		
정보통신	이동기지국(재난안전통신망, 상용망 등), 버킷차량, 통신복구장비,		
도 로	제설기, 제설차, 제설제, 모래, 모래살포기, 블로워, 양수기 등		
기 상	이동식 기상관측장비, 기상관측차량, 휴대용 온·습도계, 기압계 등		
기동장비	굴착기, 카고트럭, 덤프트럭, 스kid로더, 크레인, 카고크레인, 드론, 로우더, 대형헬기, 중형헬기 등		
대피시설	운동장, 체육관 등		

6 요청 및 건의사항(공통)

요청 및 건의 사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관련업무 담당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과장 또는 담당업무책임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작성요령

① 일반현황(공통)

1. 지원활동 가능 재난유형

- 예시를 참고하여 지원활동 가능한 재난유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시의 기재된 재난유형 외의 지원활동 가능한 재난유형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 또한 작성한다.

2. 재난현장에서의 주요기능

- 예시를 참고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주요기능을 세부적으로 작성한다. 예시의 기재된 재난현장 주요기능의 세부내용 외의 주요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또한 작성한다.

② 운영체계(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1. 재난대응계획 또는 재난대응매뉴얼

- 재난대응계획 또는 재난대응매뉴얼 등 재난현장 대응을 위하여 수립한 관련 계획 또는 매뉴얼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재난현장 대응운영체계 및 조직도

- 재난현장 대응 운영체계 및 조직도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3. 비상연락망

- 재난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구성도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4. 재난현장 자원관리체계

- 재난 발생 대비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단, 보안 상의 이유로 자원 관리체계에 대해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안 관련 법령 등을 작성란에 기재하고 작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③ 재난 대비·대응 우수 사례(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1. 재난대비훈련 우수사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우수사례를 작성한다.
- 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실시한 재난대비훈련과 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 지역본부, 지사 등이 실시한 훈련 중 우수 훈련사례를 작성하고 훈련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우수사례에는 훈련에 동원된 인적 및 물적자원, 재난대응 운영체계 가동내용, 훈련 시 임무 이행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난대응활동 우수사례

- 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 지역본부, 지사 등이 참여한 긴급구조대응활동 중 우수사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우수사례에는 긴급구조대응활동에 참여한 인적 및 물적자원 현황, 재난대응 운영체계 가동내용, 재난대응 임무 이행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타 우수사례

- 긴급구조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기타 재난대비·대응 우수사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④ 인적자원(공통)

1. 재난안전법 제55조 긴급구조교육 이수자

- 교육대상자 관련 내용, 계산식 등을 참고하여 총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총 교육대상자 대비 교육이수자 비율을 작성한다.
- 교육이수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재난안전법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 이수자

- 교육대상자 관련 내용, 계산식 등을 참고하여 총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총 교육대상자 대비 교육이수자 비율을 작성한다.
- 교육이수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경력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근무인원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등 근무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근무기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총 근무인원 대비 업무경력 1년 이상 종사자 비율을 계산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근무기간은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근무한 총 기간으로 본다.

4. 긴급구조 관련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

- 예시를 참고하여 긴급구조 관련 자격증 명칭과 해당 자격증의 보유인원을 작성하고 자격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 예시의 기재된 자격증 외의 긴급구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되, 평가를 주관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 관련 자격증 여부를 결정한다.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총 근무인원 대비 긴급구조 관련 자격보유자 비율을 계산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⑤ 물적자원(시·도 긴급구조지원기관)

1. 재난상황시설

-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로서 종합관제실, 당직실, 상황실 중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하고 재난상황시설 부재로 야간·휴일 재택근무 운영 시, '재택비상대기'로 작성한다.

2. 정보통신장비, 물자, 재난대응 시설·장비

- 예시와 계산식을 참고하여 장비명, 보유수량, 적정 보유(확보) 기준, 적정 보유(확보) 기준 대비 보유수량 등을 작성하고 적정 보유(확보) 기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예시의 기재된 물적자원 외의 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되, 평가를 주관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 관련 물적자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적정 보유(확보) 기준은 물적자원별 적정 보유 수량 등에 관해 긴급구조지원 기관에서 수립되거나 작성된 모든 문서 중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